

#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2 년도

베에요양원



# 목 차



- 1. 노인학대의 정의
- 2. 노인학대의 특성
- 3. 노인학대의 유형
- 4. 노인시설에서 발견되는 주요 노인학대
- 5. 노인시설 생활에서 노인의 권리
- 6. 노인학대 대처방안 및 신고방법

# 노인학대의 정의



**노인학대**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

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)

즉,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, 정서적, 성적,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,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자기방임 및 유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.

# 노인학대의 특성



## 지속성

- 오랜기간 동안 노인 학대가 발생 되었음.

## 복합성

-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.

## 반복성

- 노인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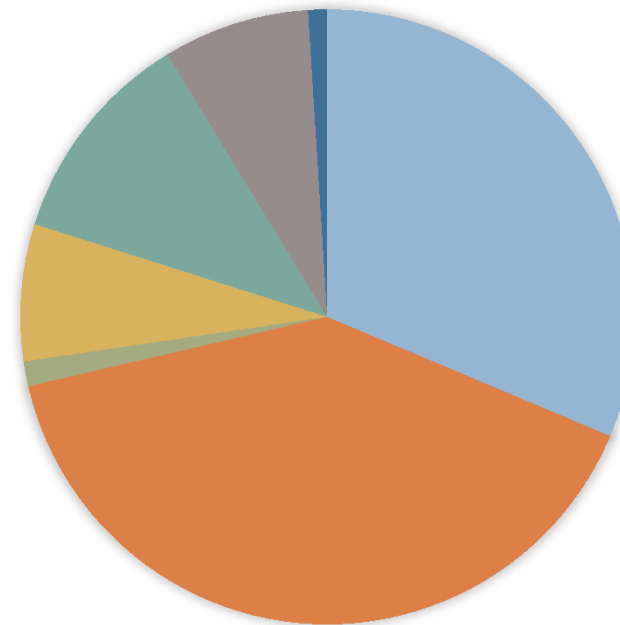
## 은폐성

-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.

# 노인학대의 유형3



-노인학대유형 통계자료,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(2016)-



노인학대 유형별 빈도를 보면,  
신체 및 정서적 학대 유형이 높게 나타납니다.  
그러나 방임도 12%로  
간과할 수치는 아닙니다.



# 신체적 학대



## \* 신체적 학대

물리적 힘,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



# 정서적 학대



## \* 정서적 학대

욕설,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

## 성적 학대 ③



### \* 성적 학대

성적수치심 유상행위, 성폭력 등의 노인이나에 대하여 강제로 행하는 성적행위



# 경제적 학대



## \* 경제적 학대 / 학취

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학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



# 방임 ⑤ 방임



## \* 방임

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

# 자기방임



## \* 자기방임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행위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



# 유기



\* 유기

보호자 /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# 4

## 노인시설에서 발견되는 주요 노인학대

- ▶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, 협박, 욕설을 함.
- ▶ 목욕이나 속옷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 또는 창피를 느끼게 함.
- ▶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및 보호를 하지 않음.
- ▶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려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, 골절이 보임.
- ▶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강압적인 노동행위를 강요함.
- ▶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함.
- ▶ 어르신의 주변환경을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게 관리함.
- ▶ 종교활동을 어르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킴.

# 노인시설 생활에서의 노인의 권리
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·착취·학대·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시설 내·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시설 내·외부에서 개인 및 단체활동과 정치·문화·종교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


# 노인학대 대처방안 및 신고방법

## 학대피해노인 대처방안

### • 응급 상황



\*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 : 현금, 신분증, 인감, 카드, 약

### • 비응급 상황



## 노인학대 신고



1577-1389

### 신고자의 비밀보장

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.

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

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
(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)

#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를 누르시면 보건복지 및 긴급지원 관련 모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2007. 1. 1부터 아동학대(1391), 노인학대(1389), 위기가정(1688-1004),

푸드뱅크(1377) 및 노인치매(1588-0678) 상담전화가 ☎129와 통합 · 운영 됩니다.

[129와 함께 이용 가능한 전화 : 아동학대(1577-1391), 노인학대(1577-1389), 푸드뱅크(1688-1377)]



보건복지부



보건복지콜센터



감사합니다,  
건강하세요, 어르신😊